

영주시 공고 제2022 - 432호

「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 년 3 월 16 일

영 주 시



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개정이유

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관련 법령 변경에 따라 현행에 부합하도록 관련 법령 정비(안 제4조제1항)
 -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8조 삭제
 - 「자동차등록령」 및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

3. 개정조례안 : 붙임 1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2

5. 의견제출

이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주시장(참조 : 세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 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주소, 연락처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보내실 곳

주 소 : 경북 영주시 시청로 1(휴천동 470)

영주시장(참조 : 세무과장)

연락전화 : (054)639-6381, Fax(054)639-6389

<붙임 1>

영주시 조례 제 호

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영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「자동차관리법」 제48조 및 「자동차등록령」 제5조제2항”
을 “「자동차등록령」 제5조 및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99조”로, “법
제6조제1항”을 “법 제6조”로, “해당 자동차에 대한”을 “해당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